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9월 1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9. 10.(월)	담당부서	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산업과
담당과장	천영길 과장(044-203-4410) 김종우 과장(02-2100-1142)	담 당 자	변재택 사무관(044-203-4419) 남경우 전문관(02-2100-1144)

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, 본격 추진

- 『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』 국무회의 통과, 9.21일부터 시행 -

□ 『**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**』(이하 「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」) 개정안이 **9. 11.(화) 국무회의**에 **상정·의결**되어 **9. 21.(금)**부터 **시행**한다.

□ 이날 의결한 『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』 개정안은 지난 2. 28. 국회를 통과한 『**국가균형발전법***』 **시행을 뒷받침**하기 위한 것으로,

* 김경수 의원 발의안('17.9.29), 박찬우 의원 발의안('17.9.28)을 병합하여 대안마련

○ 세부적인 **국가혁신클러스터**(법명 : 국가혁신융복합단지) 지정·지원 방안, **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** 구성·운영 방안, **지역발전투자협약**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.

○ 이들은 **현 정부 대표 균형발전 정책**으로 지난 2월 『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』을 발표했다.

【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】

① **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요건 및 절차** (제16조의2~4)

- **(지정대상)** 혁신도시, 행복도시, 기업도시, 경제자유구역, 산업단지, 연구개발특구, 투자선도지구,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**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·단지**
- **(지정 등 절차)** 시·도지사 신청 → 관계부처 협의 → **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** →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(혹은 해제 및 변경)

② **국가혁신클러스터 재정지원 및 입주기업 인·허가 지원 등** (제16조의5)

-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**혁신프로젝트** 등을 위해 **재정을 지원**하고, 공장 설립 승인, 건축허가 등 **인·허가**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**신속처리**

③ **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** (제19조)

-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 신청안 작성 → **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** → **위원회에서 주관부처 결정** → **주관부처**에서 시·도, 관계부처와 협의해 **체결안 작성** → 관계부처 -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결 → 예산 포괄지원

④ **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·운영** (제32조~제32조의2)

- **(구성)** 관할 시·군·구, 지방의회,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의 추천을 거쳐 **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**로 구성하고, 시·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
- **(운영)** 소속 시·도의 혁신을 위한 **전략 수립**, **지역사업 평가 및 조정**, **예산 신청방향**, **제도개선 과제 발굴** 등 심의

□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,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**하반기 중**으로 **국가혁신클러스터**를 **지정**하고,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**혁신 프로젝트**를 **추진**한다.

○ 아울러 **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**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, 주요 지역사업 평가·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**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**가 **9월 21일**에 **전국적으로 출범**한다.

○ **지방자치단체**가 **주도**하여 지역에 필요한 **사업들을 기획·추진**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,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**지역발전투자협약**은 **내년 초**부터 **시범사업**을 **추진**한다.

* **시범사업 대상** : **일자리** 창출, **생활 사회기반시설(SOC) 공급**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변재택 사무관(☎ 044-203-44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